

외국인학생 학사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1.)

제2조(외국인학생의 정의) 외국인이라 함은 본인의 국적이 외국인 자를 말한다.

제3조(입학) ① 외국인학생은 내국인학생과 구분하여 별도로 선발할 수 있다.

② 각 학과는 외국인학생의 언어능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언어사용과정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언어사용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9. 1.)

1.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모집 단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입학 시 영어능력을 검증하여 선발하는 과정으로,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을 영어로 진행하는 과정

2. 이중언어과정: 모집 단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을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해당 외국어 통역 제공)로 진행하는 과정

③ 제1항에 의해 선발하는 외국인학생의 언어사용과정 별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다.(개정 2019. 3. 1., 2019. 9. 1. 2020. 9. 1.)

구분	지원자격
한국어사용과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영어사용과정	· TOEFL iBT 80점, IELTS 5.5급, TEPS 600점(new TEPS 326점) 이상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 또는 영어를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자 중 국적 증빙 서류와 현지 대학 학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이중언어과정	· 해당 과정에서 사용되는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

④ 언어사용과정 별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⑤ 협약(국가, 대학, 기관) 또는 국립국제교육원 등을 통한 개인별 지원에 의하여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전형 서류는 국제처를 경유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⑥ 외국인학생이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는 학위검증을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⑦ 외국인학생의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사전 선발할 수 있으며, 사전 선발된 학생은 선발 승인된 다음 학기부터 3개 학기 이내에 제3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입학할 수 있다.

제4조(외국어자격시험 대체인정) 외국인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외국어자격시험(한국어) 대체를 인정할 수 있다.

1. 한국어 강좌 1과목 이상 이수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제5조(학위수여 자격) ① 제3조제3항에 의해 입학한 외국인학생의 학위수여 자격은 대학원 학칙 제37조의 학위수여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항에 의해 입학한 외국인학생의 학위수여 자격은 대학원 학칙 제37조의 학위수여자격 요건에 제3조제3항의 지원자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2018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의 학위수여 자격은 별표 2를 적용한다.(개정 2019. 9. 1.)

제6조(장학금) 외국인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침을 내국인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9. 9. 1.)

① 협약(국가, 대학, 기관) 또는 국립국제교육원 등을 통한 개인별 지원에 의하여 입학한 외국인학생에게는 협약 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대학원별 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9. 1.)

1. 일반대학원: 별표 3
2. 특수대학원: 별표 4

③ 장학 유지 조건: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단, 한국어 강좌는 제외) 과목실적 없이 평균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특별우수장학은 평균 95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이중언어과정 소속 외국인학생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기타) ① 외국인학생에게는 명교생활관과 협조하여 기숙사를 우선 배정토록 한다.

② 재학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학생은 학위 취득 시까지 외국인학생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지침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영어사용과정, 이중언어과정 운영 학과명

1. 일반대학원(개정 2019. 9. 1., 2020. 3. 1.)

구 분	학과명
영어사용과정	영어영문학과, 경영정보학과, 영어교육학과, 통·번역학과, 글로벌한국어문화교육학과, 간호학과, 통계학과, 약학과, 컴퓨터공학과, 의학과
이중언어과정 (중국어)	교육학과(융합교육학전공), 경영학과(융합경영학전공), 건축학과(융합건축학전공), 음악학과(융합음악학전공), 디자인학과(융합디자인전공)

2. 경영대학원(개정 2019. 9. 1.)

구 분	학과명
영어사용과정	GMBA학과

[별표 2] 일반대학원 외국인학생 학위수여 자격(2018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개정 2019. 9. 1.)

지원자격	학위수여 자격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자격증 취득자	대학원 학칙 제37조의 학위수여 자격을 갖춘 자
영어능력시험 자격증 취득자 (TOEFL iBT 80점, IELTS 5.5급, TEPS 600점(new TEPS 326점) 이상)	
모국어가 영어 또는 중국어(이중언어과정)인 자	
학과장이 추천한 자	대학원 학칙 제37조의 학위수여 자격과 아래 중 하나를 갖춘 자 -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자격증 취득자 - TOEFL iBT 80점, IELTS 5.5급, TEPS 600점(new TEPS 326점) 이상 자격증 취득자 - 영어가 모국어인 자

[별표 3] 일반대학원 외국인학생 장학생 선발기준

1. 2019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생(개정 2019. 9. 1.)

장학명	자격 대상 및 기준	장학금
외국인장학(1)	· 학과장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	수업료 20%
외국인장학(2)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성적 제출자	수업료 30%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 또는 영어를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자(영어사용과정에 한함)	
외국인장학(3)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성적 제출자 · 영어능력시험 TOEFL iBT 80점, IELTS 5.5급, TEPS 600점(new TEPS 326점) 이상 성적 제출자(영어사용과정에 한함)	수업료 50%
외국인장학(4)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성적 제출자	수업료 60%
외국인장학(5)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 제출자	수업료 70%
외국인특별우수 장학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 제출자 중 직전학기 평균 95점 이상 취득자 ※ 신입학자는 성적제한 없음	수업료 100%
KISS장학	· 본교 KISS장학생 선발 기준에 의해 선발한 자	일정액

2. 2018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개정 2019. 9. 1.)

장학명	자격 대상 및 기준	장학금
외국인사랑장학	· 학과장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	수업료 30%
외국인정의장학	· 아래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 5급 성적 제출자 - 영어능력시험 TOEFL iBT 80점, IELTS 5.5급, TEPS 550점(new TEPS 297점) 이상 성적 제출자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	수업료 50%
외국인특별장학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 제출자	수업료 70%
외국인특별우수 장학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 제출자로서 직전학기 평균 95점 이상 취득자(신입생은 성적제한 없으며 2017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수업료 100%
외국인진리장학	· 외국어능력 및 학업성취도에 따라 특별히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록금 100%

[별표 4] 특수대학원 외국인학생 장학생 선발기준

1. 경영대학원(개정 2019. 9. 1.)

장학명	자격 대상 및 기준	장학금
글로벌 외국인장학	· 영어능력시험 TOEFL iBT 80점이상, IELTS 5.5급, TEPS 600점(newTEPS 326점) 이상 성적 제출자(영어사용과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 제출자	수업료 30%

2. 정책대학원(개정 2019. 9. 1.)
별표 3의2 일반대학원 외국인학생 장학생 선발기준(2018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을 따른다.
3. 연합신학대학원(개정 2019. 9. 1.)
별표 3의2 일반대학원 외국인학생 장학생 선발기준(2018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을 따른다.
4. 예술대학원(개정 2019. 9. 1.)
별표 3의 일반대학원 외국인학생 장학생 선발기준을 따른다.
5. 스포츠산업대학원(개정 2019. 9. 1.)
별표 3의 일반대학원 외국인학생 장학생 선발기준을 따른다.
6. 융합공학대학원(개정 2019. 9. 1.)
별표 3의 일반대학원 외국인학생 장학생 선발기준을 따른다.
7. 글로벌창업대학원(개정 2019. 9. 1.)
별표 3의2 일반대학원 외국인학생 장학생 선발기준(2018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을 따른다.